

제정 2008. 1. 21
1차 개정 2010. 4. 19
2차 개정 2014. 3. 28
3차 개정 2020. 2. 28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회원 및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투고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확립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3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준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변조란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연구결과와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표절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이중 게재금지)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중복 투고 및 이중 게재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저자됨)

저자는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지적인 공헌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이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한 자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검토한 자
3. 출간될 원고를 최종 승인한 자
4. 연구의 정확성이나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에 책임이 있음을 동의한 자

제7조 (출판 업적의 명기)

- ① 저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의 저자(역자 포함)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단순히 특정 직책으로 인하여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없다.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경우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사사의 글로 표시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저자가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인 접촉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가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선행연구의 결과인 부분과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 또는 해석의 결과인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 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윤리)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평가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논문 심사위원의 역할 및 윤리)

- ①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즉시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및 검증결과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이사로서 하며 그 외 3인은 상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검증 및 심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심의·판정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검증 절차)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조사대상이 된 사안의 개요를 서면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 조사 절차 중 1회 이상 윤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구술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연구윤리위원의 비밀 보호 의무)

연구윤리위원은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의 신분을 공개해서도 안 된다.

제1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고, 일정기간의 논문투고금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논문 게재 취소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준한다.